

<p>이하인 공동주택(단, 2001.5.23~2002.12.31 까지 최초분양계약을 하고 2004.12.31까지 취득할 경우)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25%를 경감함.</p> <p>○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의 이유로 하도급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p> <p>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태호)</p> <p>가. 공동주택분양 입주자에 대한 감면확대조치는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주택수요촉진을 위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를 경감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이에 따른 세수감소도 2004년까지 803억원 정도 예상됨.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을 위하여 해야 할 각종 도시기반시설이나 복지정책도 재원이 있어야 할 수 있으며, 현재 서울시의 부채가 6조 3천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빈번한 세수감면정책은 재정건전화에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p> <p>나.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하도급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는 경우 주택을 처음부터 소유할 의사가 없었고, 원청업체의 부도로 부득이 대물변제로 받은 만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함.</p> <p>4. 결의 및 답변요지 : 생략</p> <p>5. 토론요지 : 없음</p> <p>6. 수정안의 요지</p> <p>가. 수정이유</p> <p>○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을 시 하도급업자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부정하게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받으려는 업자들의 의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p> <p>나. 수정주요골자</p> <p>○ 조례안 제12조의2(하도급업자에 대한 감면)중 "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 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아 하도급업자의 명의로 이전 등기하는 경우"를 "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불가피하게 채권액 이하의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아 하도급업자의 명의로 이전 등기하는 경우"로 수정함.</p>	<p>7. 심사결과 : 수정가결</p> <p>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p> <p>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p> <hr/>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15%;">의안 번호</td> <td style="width: 35%;">924</td> <td style="width: 50%;">2001년 9월 일 행정자치위원회</td> </tr> </table> <p>1. 심사경과</p> <p>가. 제안자 및 제안일자 : 2001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시장 제출</p> <p>나. 회부일자 : 2001년 8월 22일</p> <p>다. 상정일자 : 제1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01년 9월 4일 상정 의결)</p> <p>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김건진)</p> <p>가. 제안이유</p> <p>○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과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p> <p>나. 주요골자</p> <p>○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적용되는 법인에 재산을 매각할 때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 8%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케 함.</p> <p>○ 최소분할면적이 90㎡에 미달되는 소규모 토지는 인접한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케 함.</p> <p>○ 공유토지로서 서울시의 지분이 지역별로 일정규모 이하인 공유토지를 공유자에게 매각할 때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함.</p> <p>○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내용에 부합되지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시유지를 인접한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함.</p> <p>○ 단일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함.</p> <p>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태호)</p>	의안 번호	924	2001년 9월 일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번호	924	2001년 9월 일 행정자치위원회		

<p>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안 제22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에서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나,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5% 내지 8%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에 당해사업목적에 위하여 재산을 매각할 때 매각대금을 5년 이내 기간으로 연 8%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에서 규정한 수의계약대상 중 건축법 제49조제1항(대지의 분할제한)에 의거 최소분할면적(90㎡)에 미달되는 소규모 토지의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시행령상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 매각대금을 5년 이내 기간으로 연 8%의 이자로 분할납부케 하고자 함. 연 8%를 분할 납부할 경우 시중금리를 비교할 때 저금리라고는 할 수 없으며, 소규모 토지의 효율성 확보 및 빠른 매각을 위해서 매수자의 경제적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도입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함. <p>나. 수의매각대상 재산의 추가(안 제39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에서 수의계약의 대상 중 제25호에서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본 조례에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내의 시유지를 당해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고자 하는 인접한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수의계약토록 규정하고자 함. 이는 만약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안에 시유지가 있어 이를 제3자가 매수한 경우 매수자의 동의 없이 사업추진자체가 	<p>불가능하여 사업주체가 시유지를 매수한 제3자에게 비싼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인접토지 소유자에게만 수의매각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함.</p> <p>다. 수의계약대상자 용어정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개정안 제22조제3항제9호에서 언급한 수의계약대상자는 “인접토지소유자”가 되고, ○ 조례개정안 제39조제5항제6호에서 수의계약대상자는 “인접토지소유자”로 명기되어 있음. ○ 실제 두 조항 모두 토지경계선을 접한 소유자만 수의계약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용어의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p>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p> <p>5. 토론요지 : 없음</p> <p>6. 수정안의 요지</p> <p>가. 수정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잡종재산의 매각)제2항 “수의계약매각” 대상규정중 제7호에서 “토지를 그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 규정하는 것과 합치되므로 수정코자 함. <p>나. 수정주요골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9조(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 제5항제6호7호중 “인접”을 “인접”으로 수정함. <p>7. 심사결과 : 수정가결</p> <p>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p> <p>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p> <hr/>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및지방공무원소정심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및지방공무원소정심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명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및지방공무원소정심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를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및지방공무원소정심사위원회실비보상조례”로 한다.</p> <p>제1조중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4항 및 제14조제3항”을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6항 및 제14조제4항”으로 하고, “실비변상”을 “실비보상”으로 한다.</p>
--	---